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4. 4.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8년 3월 2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3월 28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 3. 31)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김정진)

가.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의 자긍심, 책임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도시디자인 및 녹지조경 등 종합적 시각으로 순찰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기고자 하며, 주민불편살피미 대원의 준수사항 및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민불편살피미를 운영하여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민 간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영통이 자전거 순찰대” 및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의 활동범위와 관리·운영 주체를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의 구성 및 활동기간, 위·해촉 사유 등을 규정하여 순찰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안 제7조, 안 제8조)
-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원으로서 준수사항과 활동비 지원, 보험가입, 포상, 경력 등을 인정함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안 제13조 내지 제19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김 병 옥)

- 본 조례안은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 활동의 운영을 체계화하여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것은 없으며,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안 제7조 제3항 주민불편살피미 대원의 활동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審査結課：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27 호
----------	---------

제출년월일 : 2008.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의 자긍심, 책임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디자인 및 녹지 조경 등 종합적 시각으로 순찰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 다. 또한 주민불편살피미 대원의 준수사항 및 지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주민불편살피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기본책무와 우리 주민들이 직접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 및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의 활동범위와 관리·운영 주체를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의 구성 및 활동기간, 위·해촉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순찰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안 제7조, 제8조)
- 라.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원으로서의 준수사항과 활동비 지원, 보험가입, 포상, 경력 등을 인정함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 (안 제13조 내지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14,376천원 편성 되었음
(2009년도 활동경비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8.1.10~1.30)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디자인 및 녹지조경 등 종합적 시각으로 순찰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주민불편살피미의 지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불편살피미의 활동은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주민들이 직접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주민불편살피미”라 함은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와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를 말한다.
②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라 함은 해당 동의 주민으로 동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이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③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라 함은 관내 주민 또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서 깨끗한 영등포 조성을 위하여 이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활동임무)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 및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의 활동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뒷골목 무단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수거용기 주변 청소 상태 점검
2. 도로변(간선,지선) 노상적치물 방치 상태 점검
3. 도로 및 보도 등 시설물 파손 상태 점검
4. 맨홀 및 빗물받이 관리상태(하절기 침수 우려) 점검
5. 독거노인가정 수시방문 생활 상황 파악

6. 소년소녀세대, 급식아동에 대한 지원품 전달
7. 한강시민공원 및 안양천 · 도림천 공공시설물 점검
8. 한강 · 안양천 · 도림천 수질오염행위 감시
9. 각종 시설물 이상유무 및 주민불편사항 신고
10. 기타 도시디자인 및 공공시설물 점검, 자연보호 활동 등

제5조(관리·운영) ①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의 운영 총괄은 동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②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의 운영 총괄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서류) 주민불편살피미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지원서 1부
2. 명함판 사진 1매

제7조(구성 및 활동기간) ①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 활동 인원은 동별 30명 내외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관내 65세 이하의 주민 중 건강상태 양호하고, 자전거 운행이 가능한 자
2. 구정에 관심과 참여의식이 높은 자

②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의 활동 인원은 300명 내외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직원 및 관내 주민 중 인라인 스케이팅 활동이 가능한 자
2. 구정에 관심과 참여의식이 높은 자

③ 주민불편살피미 대원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④ 위 제1항과 제2항의 활동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해촉) ①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는 관할 동에 거주하는 애향심이 강하고 활동능력이 있는 주민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②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는 영등포구민으로서 자원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구정에 관심이 많은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주민불편살피미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와 거동불편에 따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봉사활동 중단을 원하는 경우
4. 해당대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였을 경우

제9조(위촉장 수여) 구청장은 주민불편살피미의 자긍심 고취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10조(신분증 발급) 구청장은 주민불편살피미의 대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1조(관리카드)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주민불편살피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참여기록부 및 순찰일지를 작성·관리한다.

② 주민불편살피미의 자전거, 물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활동시간) 주민불편살피미의 순찰활동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간, 야간, 공휴일도 활동할 수 있다.

제13조(의무사항) 주민불편살피미로서의 품위 유지와 주어진 역할을 숙지하여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수칙의 준수) 주민불편살피미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 등 사고의 제반요인을 제거한 후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제15조(복장) 주민불편살피미는 근무 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불편살피미 순찰활동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민불편살피미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의 “자원봉사 활동경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제1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주민불편살피미에 등록된 순찰대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등) 구청장은 주민불편살피미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경력인정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주민불편살피미 대원의 지속적인 순찰활동기간을 자원봉사활동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주민불편살피미 대원에 대한 순찰 및 모바일PC 활용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순찰 생활화 및 도시디자인 등 순찰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